

# 예산총칙

## 2007년도 [1회추경]

\* 제1조 : 200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 총액	일시 차입 한도액
총 계	976,480,004	29,294,400
일반회계	680,440,838	20,413,225
특별회계	296,039,166	8,881,175
소 계	160,583,988	4,817,520
기타특별회계		
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	35,585	1,068
의 료 보 호 기 금 운 영 특 별 회 계	3,206,541	96,196
영 세 민 생 활 안 정 기 금 운 영 특 별 회 계	1,115,000	33,450
장 기 미 집 행 특 별 회 계	1,000,000	30,000
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	6,907,000	207,210
도 시 기 반 시 설 특 별 회 계	2,400,000	72,000
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	30,775,501	923,265
도 시 철 도 특 별 회 계	115,144,361	3,454,331
공 기 업 소 계	135,455,178	4,063,655
공 기 업		
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65,007,799	1,950,234
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70,447,379	2,113,421

\* 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‘세입·세출예산’ 과 같다. 다만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.

\* 제3조 :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‘채무부담행위조서’ 와 같다.

\* 제4조 : 200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**42,300,000천원**으로 한다.

\* 제5조 :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‘명시이월사업조서’ 와 같다.

\* 제6조 : 200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‘계속비조서’ 와 같다.

\* 제7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**9,799,752천원**으로 한다.

\* 제8조 :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.